

—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2년 7월 12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2년 7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02년 7월 15일

제7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조 훈 영

나. 제안이유

- 대통령령 제16550호 『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』이 부칙 제3조제3항이 신설됨에(2002.6.10)
- 2003년 2월 28일까지 자치단체의 결원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·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.

다. 주요내용

- 지방공무원 정원 : 1,316명(변동없음)
- 조례부칙에 초과현원(종류별·직급별)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.
 -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6명은 2003. 2.28일까지 초과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단체 정·현원 관리지침(2002. 6. 1) - 경상북도
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

(부칙 : 제16550호 제3조제3항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경 도

- 4년여의 지방자치단체 구조 조정이 2002. 7.31로 마무리됨.
-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직종·직렬·계급별 정원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나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
-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령 제16550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에 부칙 제3조제3항을 신설하여 2003년 2월28일까지 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종류별·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.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으로 저촉사항은 없음.
- 『다만 부칙에 있어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』는 이 조례 개정 지침이 2002. 8. 1일자로 시행일을 명시하고 있어 수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결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